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97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김길영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규남, 김동욱, 김용호, 김춘곤, 김혜영, 서호연, 송경택, 심미경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배, 최민규, 한 신, 황철규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○ 체력저하와 비만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가운데,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. 체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근거를 만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체력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(안 제16조제9호)

나. 현재 제9호를 제10호로 함(안 제16조제10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 1. ~ 8. (생 략) 〈신 설〉 9. (생 략)	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 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문서번호	2023101600000084

비 대 상 사 유 서

요 청 인 : 김길영 의원	담 당 :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
접 수 일 : 2023.10.16.	
회 신 일 : 2023.10.20.	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
2. 작성자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제9호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련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-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을 기추진[1]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 아님

[참조] 2023년 서울시 시민 체력증진 활성화 및 사업 관련 분야별 예산

(단위: 천원)

관련 조항	부서·정책·단위·세부	예산액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제9호	서울시 체력인증센터 운영	784,000,000

주 : 예산과목 :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, 시민생활체육 진흥, 생활체육활성화,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, 자치단체경상보조
자료 : 2023년 서울시 제4차 간주처리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손제승
☏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
1)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